



#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에 기초한 직장 차별 또는 학대 보호 규정

-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LAD)은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또는 성별 비순응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인식된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인식된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에 기초한 차별 및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 2 고용주가 채용이나 해고, 승진, 또는 혜택 설정(의료보험, 육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포함) 시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을 기초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회사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3 LAD는 고용주가 적대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직원이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에 기초한 학대를 받는 것을 방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을 논바이너리라는 이유로 학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4 LAD는 개개인이 그들의 성 정체성과 일관되도록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그들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과 일관되도록 고용주의 복장 규정을 따르거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름, 경칭, 또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성별에 대한 특정한 "증명"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스커트 착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관은 그를 반복적으로 "그녀" 또는 "Ms."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 5 고용주는 이상의 권리나 LAD에 따라 보장된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하여 그러한 인물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http://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http://NJCivilRights.gov)

**DIVISION ON**  
**NJ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02/25/21